

외국의 기술도입 및 제휴절차 안내

On the Processing guide of Foreign technical inducement & contract

編 輯 室
Editorial Rm

본고는 업계에서 선진외국기술을 도입, 제휴함에 있어 대외적인 선진건설기술보유국의 기술자원화 경향의 심화로 첨단, 핵심기술의 도입 및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외국의 기술도입과 관련한 국내의 제반법규 절차 및 계약서의 작성요령 등을 소개한다.

제1장 기술도입의 필요성 및 경로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술도입 절차 활발해지고 있다.

1. 기술도입의 필요성

오늘날의 있어서는 신기술개발의 속도와 더불어 상품의 수명주기(life cycle)가 날로 짧아지고 있는데다가 기술수준이 생산요소결합의 효율성을 결정하고 있어 결국에는 일국의 국제 경쟁력의 우열을 좌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기술이란 원래 무형자원들로서 지적소유권과 노우하우(know-how)의 경영권 등을 활용하는 국제적인 상품이며, 현대에는 기업의 사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생산요인으로 인정되고 있다. 오늘날 해외에서 기술도입을 원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바, 그 주요한 이유로는 기술자립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적정수준의 기술을 기술선진국으로부터 도입, 소화, 흡수하여 자기의 것을 전환시큰 경우, 산업화 초기인 1960년대에 외국기술 도입이 국내기술수준의 제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1980년대에 와서는 기술도입 절차가 종래의

2. 기술도입의 경로

기술간의 기술이전이란 주로 기업상호간에 상호적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여기에는 “기술이라는 단일 생산요소만을 이전시키는 라이센싱(Licensing)에 의한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자본·경영등을 포함한 복합생산요소를 이전시키는 해외직접투자의 두가지 기본경로가 있으며, 이 이외에도 기술인력 파견, 경영관리계약 및 기술용역기업에 의한 기술이전 등 그 경로가 다양하다.

라이센싱(Licensing)에 의한 기술이전은 최근 국제간의 기술이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특정기술 제공에 대한 대가로 기술 도입자가 기술공여자에게 로열티(Royalty)를 지급하는 형태를 취한다. 라이센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지시장에서 기술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녀야 한다. 따라서 기술도입국이 기술의 흡수능력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야 하고, 기술공여국은 연구개발투자

를 통하여 기술상의 우위를 계속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현지의 기술능력이 기술흡수를 하지 못할 정도로 뒤떨어져 있거나, 또는 기술공여국의 기술 수준과 별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라이센싱에 의한 기술이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기술인력판견에 의한 기술이전은 사람이 직접 기술수입국에 진출하여 현지의 기술수준이나 기술이전에 따른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그에 알맞는 기술을 직접 이전시킨다는 장점도 있으나 반면에 단점도 역시 크다. 즉, 그것은 기술을 추출하는 측의 의사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기술용역기업(consulting engineering firm)에 의한 기술이전이란 공사설비의 설계 및 이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관한 가능성의 탐색과 그 세부양성에 관한 가능성의 탐색 및 그 세부계획을 작성하는 기업에 의하여 기술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주로 일반건축물, 석유화학설비, 정유공장등과 같은 표준화된 기술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술용역기업에 의한 기술이전은 재원공여 또는 기술공여와는 달리 거시적 차원에서 공학분야의 관리기술등이 부족할때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기술공여측은 상당한 컨설팅 경험을 지녀야 하며 도입측과 상당한 기술상의 차이를 가져야만 기술도입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기술도입 관련법규

1. 외자도입법상의 기술도입

외자도입법에서 정한 기술도입이라함은 대한 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공업소유권, 기타 기술의 양수 및 그 사용에 관한 권리로서 대가의 지급을 대외지급수단에 의하고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의 기술과 그 기술의 사용에 직접 필요한 용역을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술도입계약의 범위

기술도입계약의 범위는 재무부장관이 외자사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술로서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지급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최초계약기간과 연장계약기간을 합산한 총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기술도입 계약으로서

(가) 정액기술료가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나) 착수금이 미화 5만불을 초과하거나, 경상기술료가 당해계약제품의 순매출액의 2%를 초과하는 경우

(다) (가), (나) 이외의 지급방법에 의한 경우

(2)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방위산업에 관한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나.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수리·금지

동법 규정상 아래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기술 도입계약은 신고수리가 금지되거나 기술제공자가 조세를 면제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당해기술도입계약을 수리한다.

(1) 신고수리가 금지되는 경우

• 독점판매권의 이용만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원자재,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판매만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수출제한조건등 현저한 불공정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당해기술의 도입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해 국산신기술제품에 대해 과학기술처장관이 당해기술도입의 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신고수리가 금지되는 항목은 국산신기술제품의 보호기간 '90. 10월로 만료됨에 따라 사실상 폐지됨.

(2) 조세감면 포기시 신고수리되는 경우(이 경우 기술제공자가 조세를 면제받지 않는다는 각서를 첨부해야 됨)

• 단순한 翻匠 또는 상표의 사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재무부장관이 외자도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고도기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술도입의 경우

2. 외국환관리법상의 기술도입

외국환관리규정 제11장에 의하면, 외자도입법 적용대상 이외의 기술에 해당하는 공업소유권의 양수 및 그 사용에 직접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갑류 외국환은 행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가. 인증대상계약의 범위

(1) 지급기간 또는 계약기간(최초계약기간과 연장계약기간을 합산한 총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계약으로서, 정액기술료는 미화 10만불을, 착수금은 미화 5만불을 경상기술료는 당해계약제품 순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기술대가에 불구하고 지급 또는 계약기간이 1년이상 3년이하인 경우

(3) 지급 또는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으로 기술대가가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나. 인증금지

(1)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방위산업에 관한 기술

*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해 국산 신기술제품에 대해 과학기술처장관이 당해기술도입의 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기술도입계약인증이 금지되는 항목은 국산신기술제품의 보호기간이 '90. 10월로 만료됨에 따라 사실상 폐지됨.

3.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상의 기술도입

엔지니어링 기술도입이란 국내사업자가 사업 및 시설물을 구축하는데 있어 국내 엔지니어링 기술의 부족 또는 낙후등으로 당해사업을 추진하기가 곤란한 경우 외국으로부터 선진엔지니어링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엔지니어링 기술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구매,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시설문의, 검사, 유지보수 및 이에 대한 사업관리등 엔지니어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응용되는 과학기술을 말한다.

가. 엔지니어링 기술도입의 신고 대상기준

기술도입 신고는 미화 30만불이상의 엔지니어링 기술로서, 기술도입계약 체결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기술도입계획신고와 기술도입 계획신고후 신고하여야 하는 기술도입계약신고 등 2단계로 분류되어 있다.

(1)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획신고

엔지니어링기술을 도입코자 하는자는 기술제공자와 엔지니어링 기술도입에 대한 협상을 개시하기 30일전에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획신고서 1부를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신고

엔지니어링기술을 도입코자 하는자는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신고 2부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의 신고는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획신고를 마친 者에 한한다.

(3)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신고의 처리기간 및 통지

과학기술처장관은 기술도입계약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여부를 결정하고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가를 대외송금할 수 있도록 신고수리 확인서를 발급,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처는 신고인의 신고내용이 불명확 하여 신고수리금지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한 후 6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신고처리기간(20일)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 국방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위산업분야의 기술도입예정자는 미리 당해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획에 관해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가) 신고수리 금지사유

과학기술처장관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이내에 제출한 신고서를 수리한다(수 제12조3항).

– 독점판매권의 이용만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원자재·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판매권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당해 기술의 도입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신고수리된 계약의 효력발생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신고수리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은 그 신고수리일로부터 6월 이내에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고수리일로부터 6월(연장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이내에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은 그 신고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장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절차

1. 외자도입법상의 기술도입 계약신고절차

외자도입법 제23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외국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된 모든 권한은 당해 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의 주무부장관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신고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주무부장관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기술성

② 계약조건

③ 도입되는 기술이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대한민국의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주무부장관은 상기 사항을 검토한 결과, 신고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검토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는 그 보완 또는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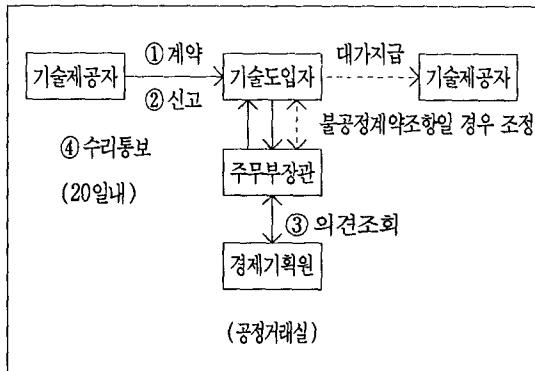
주무부장관은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사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는 날에 수리된 것으로 보며, 그 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효되어야 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술도입의 신고대상은 계약(대가지급)기간이 1년이상으로서(연장계약기간 포함)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정액기술료 : 30만US\$ 이상

② 경상기술료 : 촉수금 5만US\$ 이상이면서 순매출액의 3%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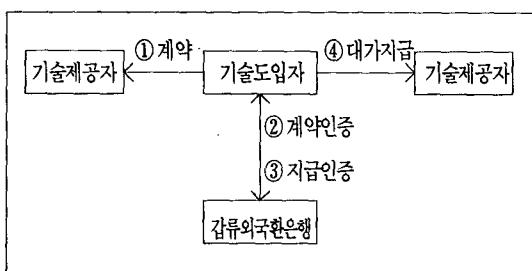
- ③ 조세면제 신청이 있는 경우
 ④ 방위산업에 관한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외자도입법상의 기술도입절차는 다음 <표>와 같다.

2. 외국환 관리법상의 기술도입계약 인증절차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기술 가운데 일부는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계약인증 대상기술로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기술의 도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갑류 외국환은행(한국외환은행 본·지점, 시중은행본점 및 주요지점)의 長의 계약인증만 받으면 된다.



인증대상은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계약이 아닌 경우로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때이다.

- ① 정액기술료 : 30만 US\$ 미만
 ② 경상기술료 : 착수금이 5만US\$ 미만이거나 순매출액의 3% 미만

③ 지급방법이 위 이외의 경우

인증시 확인(유의)해야 할 사항은 기술대가가 국제가격 및 국제여건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이어야 하며, 국내에서 사용될 경비는 외화로 지급하는 조건이 아니어야 하며, 기술도입 등에 대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내보험회사에 부보하여야 한다.

인증절차로서는, 먼저 계약기간이 1년이상으로서 기술대가가 일정액 미만이거나, 계약기간이 1년미만으로서 기술대다가 10만US\$를 초과하는 경우는 다음 <표>와 같다.

계약(지급)기간이 1년미만이고, 기술대가가 10만US\$ 이하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